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7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 : 양정숙・김한정・윤준병

김수흥 • 이용호 • 안호영

서영교 • 이상헌 • 신영대
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 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 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.

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내용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게 되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. 이에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,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"징수액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 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에서 해당 물자의 판매 또는 수출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.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	제18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	③
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<u>징수</u>	<u>다음</u>
<u>액</u>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수 있다.	<u> 경우에는 징수액</u>
<u><신 설></u>	1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
	<u>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</u>
	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
	고 인정하는 경우
<u> <신 설></u>	2.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
	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
	<u>니한 경우</u>
<u> <신 설></u>	3.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
	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
	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
	<u>방자치단체인 경우. 다만, 대</u>
	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부문
	에서 해당 물자의 판매 또는
	수출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
	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

	<u>하다.</u>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기술료의 징수를 감
	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
	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<u>경우</u>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